


한국이민법학회 |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2024 하반기 공동학술대회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최근 쟁점

- 일시: 2024년 11월 1일(금) 14:00~18:00
-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주최: 한국이민법학회,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 후원: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
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한국이민법학회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일 정

- 13:40~14:00 등록
- 14:00~14:10 개회식
▶ 전체사회: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 케이앤씨)
▶ 개회사: 문재완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 환영사: 최윤철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소장
▶ 사회: 김선화 선임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 14:10~15:00 [제1발표]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관련 법제
▶ 발표: 메흐리 슈쿠로바 박사(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 토론: 염지애 박사(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 15:00~15:50 [제2발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국회 입법계류안을 중심으로 -
▶ 발표: 박광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임희선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 15:50~16:20 Coffee Break
- 16:20~17:30 종합토론
▶ 좌장: 최윤철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 케이앤씨)
▶ 토론: 유민이 부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
▶ 토론: 임정재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토론: 박효민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17:30~18:00 한국이민법학회 총회
- 18:00 폐회식
▶ 폐회사: 문재완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만찬

개회사

존경하는 한국이민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이민법학회에서는 다가오는 11월 1일(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최근 쟁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체류유형도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자·동포·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다양한 이민자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을 둘러싼 대내적 정책환경이 복잡다단해지는 가운데, 현재 우리 이민정책은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정책 대상별로 역할을 나누어 정책을 전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대상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 정책의 중복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변화하는 이민환경에서 사회통합을 향한 효과적인 이민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민정책의 뜨거운 관심사가 된 외국인 유학생 법제를 살펴보고, 이민정책 추진체계상 어떤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민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코 끝을 보이지 않을 듯하던 여름이 지나고, 맑고 청명한 계절인 가을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학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과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을 한국이민법학회 담론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문재완

환영사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붉은 가을로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건국대학교를 찾아 주신 존경하는 문재완 회장님과 이민법학회 회원님들과 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신 한국이민재단 선생님들, 이주·사회통합연구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한국이민법학회가 2024년도 하반기 학술대회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인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최근 쟁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이민법의 쟁점과 전망을 같이 고민하는 학회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긴요한 쟁점을 가지고 논의하는 학술대회에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연구소를 공동 주최의 파트너로 초대해 주신 문재완 회장님과 집행부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표적인 인구 유출국이었던 한국은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유입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생산력에 대비 인구과잉으로 대표적인 저개발 국가이었던 한국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오히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급변, 노동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주배경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대부분 산업현장이 마비되고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이주배경 국민이 한국 전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와 정책은 여전히 30여년 전 인식과 내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착과 공존보다는 손님으로 심지어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게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화할 수 있는 기본 가치를 확인하고, 그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통합은 일방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승인하는 객관적 가치에 기초합니다. 인간존엄과 평등, 상호 승인에 기초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가치로 하는 사회통합에 기초한 이민 법제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외국인과의 정착, 선주민과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한 기초로서 이민 법제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민법학회의 이번 학술대회는 이민법제 개선과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이민법학회 회장님과 집행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발제를 해 주시는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매호리 슈쿠로바 박사님, 한국법제연구원의 박광동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귀중한 말씀을 해 주시는 강성식 변호사님(법무법인 케이앤씨), 유민이 박사님(이민정책연구원), 임정재 박사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효민 교수님(서울시립대학교)께도 저희 건국대학교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오늘 사회를 맡아 주시는 김선화 팀장님(국회 입법조사처)

계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의 기획과 진행, 행사를 직접 준비해주신 한국이민법학회 선생님들,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오늘 학술대회와 이민법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도 모두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국 이민법 발전을 위한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편안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소장 **최 윤 철**

목 차

[제1발표]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관련 법제	메흐리 슈쿠로바	1
▶ 토론	염 지 애	19
[제2발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국회 입법계류안을 중심으로 -	박 광 동	23
▶ 토론	임 희 선	35
[종합토론]		
▶ 토론	강 성 식	37
▶ 토론	유 민 이	41
▶ 토론	임 정 재	47
▶ 토론	박 효 민	51

【제1발표】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관련 법제

Shukurova Mekhriniso Inoyatulloevna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2024년 11월 1일

1

Contents

1. 들어가며
2.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
3.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4.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률 및 정책 개관:
입국, 체류, 교육 및 경제활동 관련
5. 외국인 유학생 관련 문제 및 개선점

2

1. 들어가며

- 유학생 수 증가
- OECD 국가 대비 해외 유학생 비율이 낮음
-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 감소
-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역량 갖춘 인재 부족
-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및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 목표
-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지방대학 살리기, 대학의 재정 메꾸기, 인력 부족 현상 해결 등 다양한 목적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김태은, 2023)

3

1. 들어가며

- 유학 동기는 외국에서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의미함.
 - 학습에 대한 관심, 성취감, 자기계발 등 내재적 동기
 - 학위 취득, 취업 기회, 사회적 인정 등 외재적 동기
- 유학 동기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이유가 다양함.
- 세계화는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 관계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 송유리나(2013)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전공과목 심화 학습, 다양한 문화 경험, 시야 확장임.
 - 정규 학위과정 학생들과 아시아 출신 학생들은 재정 요인을 중요하게 여겼음.
 - 학문적 명성, 우수 교수진, 교과과정 등은 학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미주 및 오세아니아 출신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했음.
 - 정규 학위과정 학생들과 아시아지역 출신의 학생들은 유학 후 진로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한국 체류 유학생이 언어 및 문화적 장벽, 경제적 부담, 차별과 편견 등을 식면함.
-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개발하여 한국 사회와 경제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의 중요성
- 유학생이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 고찰 필요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입학부터 정착까지의 법적 절차, 교육권 관련 법률 및 지원 정책 검토

4

2. 외국인 유학생 (International/Foreign student)의 개념

- 학위 취득이나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외국 국적자를 의미함.
-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정의는 「고등교육법」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규정: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어학원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학(D-2) 및 어학연수 (D-4-1, D-4-7)의 체류자격 부여 (제19조의4제1항).



학위과정(D-2): D-2-1(전문학사과정), D-2-2(학사과정), D-2-3(석사과정), D-2-4(박사과정), D-2-5(연구과정), D-2-6(교환학생), D-2-7(일-학습연계 유학), D-2-8(방문학생)



비학위과정(D-4): D-4-1(한국어 연수), D-4-7(외국어 연수)

- 법적 지위: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되며, 외국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음.

<표 1> 외국인 유학생 관련 기대와 우려

행위자 (수준)	유학생에게 거는 긍정적 기대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우려
정부/국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학생 모국으로 확산 ·(유학) 무역수지 적자 개선 ·우수 인적자원 확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학생 모국으로 확산 ·불법체류, 비공식 노동시장 편입, 범죄율 증가 등 사회문제 증가
지역사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사회 다문화 수용성 증진	·집값 하락 우려에 따른 주민 및 입대업자들의 반발 ·문화적, 종교적 갈등
고등교육 기관/교원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개선 ·대학 재정 향상 ·내국인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대학 수업 질 저하에 따른 피해 ·일선 교원들의 교수의지 좌절과 업무과중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
학생	·간접적으로 다른 국가의 풍습/문화 경험 ·어학 (특히 영어) 향상	·조별 과제 등 무임승차 문제와 이로 인한 학점 하락 ·또래 집단 내 위계질서 붕괴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출처: 박근영, 김본영, 오지연. (2022).

<표 2> 유학생의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요인들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기회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적 틀

배출-흡인 접근 (Push-Pull 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을 자국에서 "밀어내는" (배출) 요인 (예: 교육 기회와 부족)과 그들을 목적지 국가로 "끌어당기는" (흡인) 요인 (예: 더 나은 교육 시스템, 취업 기회)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oks at the factors that "push" students away from their home countries (e.g., lack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he factors that "pull" them towards host countries (e.g., better education systems, job opportunities).
인적 자본 이론 (Human Capital The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의 경제적 이익과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더 나은 취업 기회와 경제 성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둠. 이는 국가들이 왜 국제 학생 유치에 투자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cuses on the economic benefits of education and how investing in education can lead to better job opportunities and economic growth. is often used to explain why countries invest in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이주 시스템 이론 (Migration Systems The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의 더 넓은 시스템을 다루며,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의 상호 연결성, 정책, 경제 조건,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주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oks at the broader system of migration, includ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and how policies, economic conditions, and social networks influence migration patterns.
신고전적 균형 모델 (Neo-classical Equilibrium Mod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주를 최적화 전략으로 보고 개인이나 가족이 월빙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과 혜택을 계산한다고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rooted in economics, view migration as an optimization strategy where individuals or families make cost-benefit calculations to maximize their well-being.
네트워크 이론 (Network The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 결정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함. 이는 목적지 국가에 대한 연결이 학생의 유학 결정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phasizes the role of social networks in migration decisions. suggests that having connections in the destination country can significantly influence a student's decision to study abroad and their success in the new environment.
학생 발달 이론 (Student Development Theories (SD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이 전이적으로 발달하는 방법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 및 환경 조건에 초점을 맞춤. SDT는 종종 국제 학생들의 학업 성공과 통합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cus on how students develop holistically and what factor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can facilitate their development is often used to improve international students' academic success and integration.
국제화 이론 (Internationalization the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내에서 국제화의 더 넓은 개념을 다루며, 이상주의, 도구주의, 교육주의와 같은 이념들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ok at the broader concept of internationalization within higher education, including ideologies like idealism, instrumentalism, and educationalism.
문화 적응 이론 (Cultural Adaptation the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며,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와 같은 전략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cus on how international students adapt to a new cultural environment, including strategies like assimilation, separation, integration, and marginalization.
신국가주의 (Neo-national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일부 국가에서 증가하는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사함. 국제 학생들이 이러한 태도와 정책에 어떻게 취약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amines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 identit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rising nationalism in some countries. looks at how international students can be vulnerable to such attitudes and policies.
신인종주의 (Neo-rac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의 맥락에서 구조적 인종차별을 탐구하며, 인종, 문화, 국적이 상호 작용하여 사회적 지위의 계층을 형성하는 방식을 다룸. 특정 지역 출신의 국제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차별과 어려움을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lores structural racism in the context of immigration, where race, culture, and nationality interact to produce a hierarchy of social positions. highlights how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ertain regions may face discrimination and challenges.

3.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8월 30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39,521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유학생**의 수는 **261,469명**으로, 2023년 8월과 비교해 **14.0%** 증가한 추세.

<표 3>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별-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년 8월	'24년 8월
총계	180,131	153,361	163,699	197,234	226,507	229,297	261,469
유학 (D-2)	118,254	101,810	111,178	134,062	152,094	163,253	188,717
한국어 연수 (D-4-1)	61,867	51,545	52,506	63,146	74,361	65,998	72,686
외국어 연수 (D-4-7)	10	6	15	26	52	46	66
전년 대비 증감률 (%)	12.1%	-14.9%	6.7%	20.5%	14.8%	-	14.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4.8월호, p.38

3.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고,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순으로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의 비중이 높음.

<표 4>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유학 (D-2)	한국어 연수 (D-4-1)	외국어 연수 (D-4-7)	총계
총계	188,717	72,686	66	261,469
베트남	41,609	47,219	2	88,830
중국	75,263	6,449	0	81,712
몽골	10,637	4,619	0	15,256
우즈베키스탄	12,125	1,868	1	13,994
네팔	8,625	353	10	8,988
미얀마	3,135	3,517	0	6,652
일본	3,214	1,384	0	4,598
인도네시아	2,605	364	0	2,969
방글라데시	2,579	89	51	2,719
러시아(연방)	1,568	879	0	2,447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4.8월호, 35, 58, 63, 9

3.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표 5>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별·학위 과정별·계열별 현황 (2023.4.1. 기준)

(단위: 명)

지역	어학 연수	과정 별																		기타 연수	합계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인문 사회	공학 계	자연 과학 계	예체 능계	의학 계	계	인문 사회	공학 계	자연 과학 계	예체 능계	의학 계	계	인문 사회	공학 계	자연 과학 계	예체 능계	의학 계	계		
남아메리카	309	189	52	26	31	-	238	176	64	17	12	3	272	9	33	11	-	1	54	181	1,114
북아메리카	566	729	91	105	102	20	1,047	438	67	36	36	18	595	119	54	36	19	33	261	1,765	4,294
아시아	34,110	53,055	11,029	4,346	8,992	30	77,452	19,626	2,556	1,084	3,559	165	25,980	7,489	3,102	1,543	4,567	301	17,002	6,778	162,322
아프리카	360	314	219	48	26	-	607	762	284	113	8	7	1,174	225	254	115	1	14	609	144	2,884
오세아니아	51	80	16	14	12	2	124	54	8	3	7	2	74	13	4	5	-	1	23	125	397
유럽	2,558	1,008	170	83	206	2	1,559	773	77	35	29	3	916	76	59	47	7	3	192	5,615	10,841
합계	37,974	55,465	11,577	4,622	9,399	54	81,067	21,829	3,056	1,288	3,661	198	30,011	7,981	3,506	1,757	4,594	353	18,141	14,628	181,842

통계.

3.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국내 체류 유학생 중 **자비유학생이 90.7%**로 가장 많고, **대학 초청 장학생 (4.2%), 정부 초청 장학생 (2.4%)** 순.

<표 6> 유학형태별 외국인 유학생수 (2023.4.1기준) (단위: 명)

유학 형태	2022년	2023년	증감	비율
자비유학생	151,628	164,910	13,282	90.7
정부초청장학생	4,062	4,414	352	2.4
대학초청장학생	7,030	7,563	533	4.2
자국정부파견 장학생	232	297	65	0.2
기타	3,940	4,658	718	2.6
합계	166,892	181,842	14,950	100.0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3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11

3.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표 7> 학위·비학위과정별,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22.4.1. 기준) (단위: 명, %)

지역	4년제		전문대		대학원		어학연수 등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도권	서울	31,768	44.7	104	1.0	19,355	44.2	20,743	49.3	71,970	43.1
	인천	1,454	2.0	221	2.2	436	1.0	855	2.0	2,966	1.8
	경기	8,777	12.4	3,563	35.9	5,554	12.7	4,327	10.3	22,221	13.3
	소계	41,999	59.1	3,888	39.2	25,345	57.8	25,925	61.6	97,157	58.2
비수도권	부산	4,610	6.5	144	1.5	2,948	6.7	2,689	6.4	10,391	6.2
	대구	1,567	2.2	1,635	16.5	1,137	2.6	1,572	3.7	5,911	3.5
	광주	2,773	3.9	28	0.3	1,420	3.2	855	2.0	5,076	3.0
	대전	3,453	4.9	364	3.7	3,171	7.2	2,744	6.5	9,732	5.8
	울산	442	0.6	226	2.3	456	1.0	114	0.3	1,238	0.7
	세종	429	0.6	87	0.9	410	0.9	100	0.2	1,026	0.6
	강원	1,582	2.2	76	0.8	741	1.7	846	2.0	3,245	1.9
	충북	1,307	1.8	146	1.5	1,133	2.6	704	1.7	3,290	2.0
	충남	4,427	6.2	552	5.6	1,842	4.2	1,782	4.2	8,603	5.2
	전북	3,331	4.7	755	7.6	2,092	4.8	1,417	3.4	7,595	4.6
	전남	898	1.3	91	0.9	1,007	2.3	712	1.7	2,708	1.6
	경북	3,224	4.5	700	7.1	1,202	2.7	1,405	3.3	6,531	3.9
	경남	761	1.1	408	4.1	611	1.4	892	2.1	2,672	1.6
	제주	257	0.4	828	8.3	300	0.7	332	0.8	1,717	1.0
	합계	71,060	100.0	9,928	100.0	43,815	100.0	42,089	100.0	166,892	100.0

출처: 교육부, 2023년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23년 4월 1일 기준.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보고서 2023-300K-01-01

12

3.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표 8> 주요 대학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연번	학교명	학위과정				어학연수	기타연수 (교환학생 등)	합계
		대학	대학원		소계			
			석사	박사				
1	한양대학교	3,275	1,577	590	5,442	854	703	6,999
2	경희대학교	3,206	2,202	258	5,666	799	447	6,912
3	성균관대학교	2,487	1,290	433	4,210	297	2,169	6,676
4	연세대학교	2,351	961	343	3,655	1,092	1,179	5,926
5	고려대학교	2,037	577	224	2,838	1,066	835	4,739
6	중앙대학교	2,819	959	291	4,069	284	358	4,711
7	한국외국어대학교	1,829	474	134	2,437	227	511	3,175
8	가천대학교	1,928	520	406	2,854	156	47	3,057
9	동국대학교	1,200	752	150	2,102	416	270	2,788
10	건국대학교	1,364	333	85	1,782	696	211	2,689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3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13

4.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률 및 정책 개관

-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제: 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련 법제와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로 나눌 있음
 외국인 유학생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이 주로 규정함: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의 발급 및 입국, 국내 체류, 활동 및 출국,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학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이, 국내생활과 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정하고 있음 (표 9 참조).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교육부와 법무부**의 전반적인 정책 변천 과정을 추진 시기와 중심 목표에 따라 **양적 확대 시기, 질적 관리 시기, 통합 관리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0 참조).

14

<표 9>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제

외국인 유학생 법제 개관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외국인 유학생 개요,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유학 개요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입학 절차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입국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사증(VISA) 발급, 체류기간	「출입국관리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입국	입국, 재입국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출입국관리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국내 생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주거	거주형태, 집구하기, 국제이사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출입국관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세법」,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금융	금융 거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교통	교통체계, 운전면허 취득, 자동차 등록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통신 및 우편	통신 및 우편체계, 이동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의료	의료체계, 건강보험의 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출입국관리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학업의 종료		
학업의 종료	출국, 국내 취업, 국내 상위교육기관의 진학	「출입국관리법」 출처: 법제저, easylaw.go.kr

<표 10> 교육부와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교육부		구분	법무부	
주요 정책	연도		연도	주요 정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사업’ 실시	1967년	양적 확대 시기	2002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 제정	1999년		2003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제도 확대 방안’ 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 발표	2001년		2004년	한국어 어학연수 사증(D-4-1) 도입
‘한국유학박람회’ 실시			2005년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 지원 대책’,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지침’ 제정
‘Study Korea Project’ 시행	2004년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 정부 합동 고충 상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 제정	2008년		2008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유학생종합정보시스템, Contact Korea 실시
‘Study Korea 2010 Project’ 시행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제정	2009년	2010년	우수인재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 용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 발표	
‘Study Korea 2012 Project’ 시행				2011년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 방안’ 발표	2010년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 방안’ 발표				2013년
‘Global Korea Scholarship’ 시행	2010년	2013년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시행	2011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 도입·실시	2013년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 (1주기)’ 시행				
‘Study Korea 2020 Project’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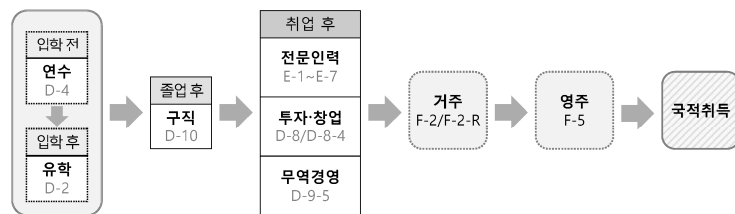
(계속)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 발표	2015년	통합 관리 시기	2014년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치 체류관리지침'개정, 인증제 결과에 따른 사증 발급 제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발표			2015년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장업과 취업을 위한 사증 (E-7, D-9, 10) 발급 확대,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부모 초청 허용 신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2주기)' 시행	2016년		2016년	일·학습 연계 유학사증, 석박사과정 전자사증, 단기유학사증 (D-2-8) 시행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3주기)' 시행	2020년		2019년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2023년		2022년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비자' 시범 실시
			2023년	숙련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2023년	과학 기술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출처: 김지하 외, (2020), 이윤주김명광 (2023)

4.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및 법률 개관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체류, 교육 및 경제활동 관련 단계별 법적 지위



입학 전후

- **유학 목적에 맞는 정보 수집:** 교과과정, 교육기간,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을 고려하여 학교 선택.
-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대한민국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받는 과정들:
정규과정: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과정. 정규과정 입학 시,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 이수 및 해당 대학의 한국어/영어 능력시험 점수 충족 필요. 입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과정에 지원할 수 있음.
 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에 허용하지 않음.
단기과정: 한두 학기 동안만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 보통 교환학생으로 참여하며, 자매학교의 혜택이 있음.
한국어 연수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10주 이상의 장기과정과 4주 이하의 단기과정으로 나뉨.
-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자격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2,3,4항)**
 대학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적 동등한 학력 필요.
 기술대학 전문학사학위 과정: 추가적으로 6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 요구.
 학사학위 과정: 전문대학 졸업과 6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 요구.
 학사-석사 통합 과정: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의 기준 충족 필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사 학위 필요.
 박사 과정: 석사 학위 필요.
- **사증(VISA) 발급:** 유학(D-2), 일반연수(D-4), 단기방문(C-3) 사증 신청. 사증면제협정 국가의 경우, 단기 한국어 연수과정 입학 시 무비자 입국 가능.
- **입국 후 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 등록증은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재학 중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표 11>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23.7. 시행)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어학연수	-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세종학당, 초급2 이상 이수	X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
			O		20시간		25시간
전문학사	-	·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학사	1~2 학년	·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석·박사	3~4 학년	·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석·박사	-	·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O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영어트랙 과정: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 (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4.10.

- **기본 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고용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허용범위:** (표 11)

졸업 후 구직 (D-10)

• **활동범위:**

일반 구직 (D-10-1):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해당자:**

일반 구직 (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점수제 면제 특례자: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6개월 부여, 연장 시 점수제 적용)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포함 (표 12 참조)

〈표 12〉 점수제 구직비자 (D-10-1) 배점표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기본	연령	20세~ 24세		10		50점	
		25세~ 29세		15			
		30세~ 34세		20			
		35세~ 39세		15			
		40세~ 49세		5			
	최종학력	국내	전문학사	15	15 15 20 30		
국내/국외		학사	15				
		석사 박사	20 30				
선택	취업경력	국내	국외	5	70점		
		1년~2년	3년~4년	10			
		3년~4년	5년~6년	15			
		5년 이상	7년 이상	5(30)			
		전문학사 (졸업 후 3년 이내)		10(30)			
	국내유학	학사 (졸업 후 3년 이내)		15(30)			
		석사 (졸업 후 3년 이내)		20(30)			
		박사 (졸업 후 3년 이내)		30(30)			
	국내 연수	대학 연수생 (D-2-5)	1년~1년6개월 (1년7개월 이상)	3(5)		3(5) 3(5) 3(5) 3 15 10 5	
		교환학생 (D-2-6)	1년~1년6개월 (1년7개월 이상)	3(5)			
		국공립기관 연수 (D-4-2)	1년~1년6개월 (1년7개월 이상)	3(5)			
		우수사립 기관 연수 (D-4-6)	1년~1년6개월 (1년7개월 이상)	3(5)			
어학연수 (D-4-1)		1년~1년6개월	3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TOPIK 5급 이상		20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사정평가 81점 이상/TOPIK 4급 이상		15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정평가 61점 이상/TOPIK 3급 이상		10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정평가 41점 이상/TOPIK 2급 이상		5					
가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제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70점	
	② 세계우수대학졸업자 (최근 3년 이내 타입지 200대, QS 500대)				20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				20		
	④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5		
	⑤ 고소득 (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총인국관리비 환부 (단위: 만 원)				항사처별 전액 (단위: 만 원)		
감점	벌칙금 300 이상	벌칙금 100이상~300미만	벌칙금 50이상~100미만	벌금형 300 이상	벌금형 200 이상 ~300미만	벌금형 200 미만	60점
	-30	-10	-5	-30	-10	-5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202410

<표 13> 구직 비자 (D-10)로 체류 기간 상한

체류자격	대상자	기간	
일반 구직 (D-10-1)	점수제 적용	· 3년 이내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2년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ime 선정 200대 외국 대학, QS 500위 외국 대학 졸업자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점수제 면제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1년
		· 기타 (구직비자 점수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기술창업 준비 (D-10-2)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2년	
	· 전문직종(E-1-E-7) 근무경력자	1년	
기술창업 준비 (D-10-2)	· 전문직종(E-1-E-7) 근무경력자 중 국민고용 보호 체류결사 확립과 원에서 법무부장관이 근무서변경, 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고시된 각종 종사자 (기계 공학기술자, 제도사,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사무원, 호텔점수사무원, 의료로디네이터,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6개월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2년	
기술창업 준비 (D-10-2)	· 창업이전 점수제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자	1년	
	· K-STARTUP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체류 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기술창업 준비 (D-10-2)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1년	
	· 창업이전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첨단기술인턴 (D-10-3)	· 해외 우수대학 (Time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원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학사: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 35세 미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최대) 2년	
	·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첨단기술인턴 (D-10-3)	· '기초연구팀, 세14소위2대 다른 기업투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2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첨단기술인턴 (D-10-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육성도움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2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육성도움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계속)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대상자: 유학 (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 (3년 이내)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소지자
- 전문직종 체류자격 (E-1~E-7) 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과태료 제외)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허용 시간: 주당 20시간 (주말 무제한) 허용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내 주당 30시간 (주말 무제한)까지 예외적 허용

유학(D-2), 구직(D-10)→ 전문인력 취업

유학(D-2), 구직(D-10) →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예술총행(E-6)/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총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 **교수 (E-1)**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 **회화지도 (E-2)**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생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사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1773)

자격 요건: 박사 학위 소지자 (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 **연구 (E-3)**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 고급과학 기술인력,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등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국공립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기술지도 (E-4)**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사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기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의료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 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 도입 및 관리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표 14> 특정활동 (E-7) 분류기준

분류기준	신 약호	참고
전문인력	E-7-1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준전문인력	E-7-2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일반기능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10개 직종)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업체 숙련기능인력 (3개 직종)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E-7-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소특자(E-7-S1)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E-7-S2)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2024.10.

- 기업투자 (D-8/D-8-4)**
법인에 투자 (D-8-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벤처 투자 (D-8-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제2호다 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개인기업에 투자 (D-8-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기술 창업 (D-8-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표 15)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내 전문학사/해외 학사 졸업자만 인정 (취득 예정자 제외)) 또는 중앙행정기관 추천자.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중 포함).

총448점 중 80점 이상 득점
(필수 항목 1개 이상 해당)

<표 15> 기술창업 (D-8-4) 비자 배점표

구분	구분		배점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기본 (313점)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특허 또는 실용	80
		디자인	50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 또는 실용	20
		디자인	10
1개 이상 필수	보유(등록)인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 발명자 (창작자)	특허 또는 실용	5
		디자인	3
1개 이상 필수	연구(E-3) 자격으로 3년 체류		15
	⑤ 발명·창업대전 (OASIS-6) 상위 5개 팀 이내 ⑦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 (OASIS-9)		각 25
	1억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사람 (ACVC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투자 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확인하여 추천한 자(정부창업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		80
선택 (135점)	②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 (OASIS-2) 수료		각 25
	③ 창업 소양교육 (OASIS-4) 수료 또는 OECD 지식재산권 보유		
	①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 (OASIS-1) 수료		각 15
	④ 창업코칭 및 멘토링 (OASIS-5) 수료		
	⑥ 창업인큐베이터 (OASIS-7) 졸업		
	학력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	
국내 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5
TOPIK 3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			10
신규 법인설립			15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2024.10.

거주(F-2)

활동범위: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점수제 우수인재:

▪ **유학인재 (F-2-7):**

- 1)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 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잠재적 우수인재 (F-2-7S):**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에서 학위 취득한 후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 포함
** 추천서 대상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표 16> 점수제 우수인재 평가항목 (최대 170점 인정)

평가 항목	공통 항목(최대 130점)				가·감점 항목(최대 40점)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 소득	가점	감점
배점	25	25	20	60	40	-80

-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함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됨. 단,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교열요원(E-7)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외국인 중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

합산점수	또는	연간소득점수	체류기간
130점 이상	또는	50점 이상	5년
120점 ~ 129점	*	45점 이상	3년
110점 ~ 119점	*	40점 이상	2년
80점 ~ 109점	*	30점 이하	1년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2024.10.

지역 우수인재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 개별 요건
대상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 (자격변경 제한 대상 제외) * 기술연수 (D-3), 일반연수 (D-4), 호필유종 (E-6-2),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기타 (G-1), 관광취업 (H-1)	(2024.1.26~12.31)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학력) 부산지역 관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창업 제외 충남 (논산시, 부여군): 한국어능력 4급 이상 경남 (거창군): 한국승강기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국어능력 4급 이상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GNI 70% 이상 및 ② 한국어능력 3급 이상	(2022.10.4~2023.10.3) 충남 (보령시, 예산군): (학력) 대·전 세출·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예정자 포함),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대구(남구):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대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거주지 제한	2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기본요건과 개별요건 모두 충족 필요
동반가족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취업 가능 업종	법무부·지자체 지정 업종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사업지역에 취업 가능) ※단, 최초 허가 받은 업종에 한함	
가족 취업	취업 가능 (배우자) -지역제한, 단순노무 분야	
자녀 취학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 (2024). p.409 재인용	

- 허가조건: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됨.

영주 (F-5)			
영주자격 세부 약호	영주 대상(명칭)	영주자격 세부 약호	영주 대상(명칭)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일반 영주자)	F-5-15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일반분야 박사)
F-5-2	국민의 배우자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점수제 영주자)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관광·휴양시설 투자자)
F-5-4	영주자격 (점수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시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18	점수제 영주사(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고액 투자자)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6	제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 별도 지침 적용)	F-5-20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
F-5-7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별도 지침 적용)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F-5-8	대한민국 출생 제한학교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첨단분야 박사)	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F-5-10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F-5-24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지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기술창업 투자자)
F-5-1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25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조건부 고액투자자)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특별 공로자)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F-5-13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연금 수혜자)	F-5-27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별도 지침 적용)
F-5-14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 별도 지침 적용)		출처: 허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2024.10.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5. 외국인 유학생 관련 문제 및 개선점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및 학습권의 법적 보장 문제

- 법적 보장의 부재:**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및 학습권(right to education)에 대한 법적 보장이 부족함 (예. 2023년 한신대 유학생들의 '강제출국' 사례).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 도구 필요성

- 필요성:** 한국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교육 목적으로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와 같은 고등교육기관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 도구가 필요함.

현재의 도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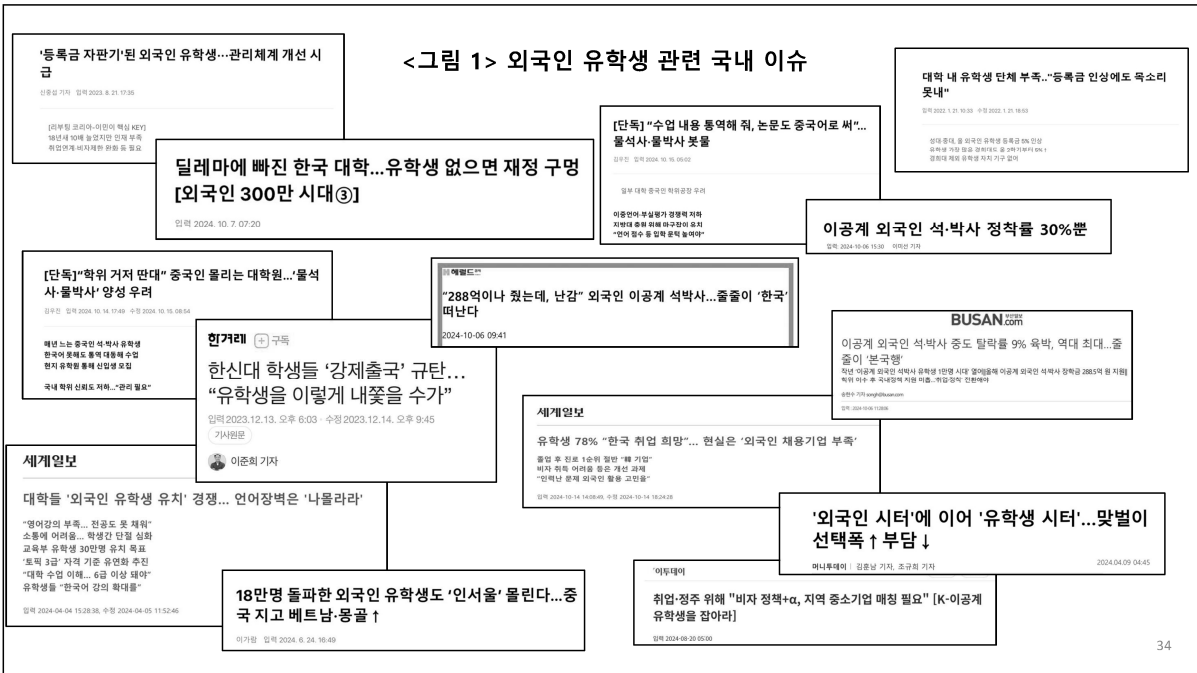
-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와 기업문화 이해, 일상생활 의사소통 능력 평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 평가.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대학 입학,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어 능력 평가. 다만, 대학(원) 강의 관련 활동(토론, 학술논문, 학위논문 글쓰기 등) 능력을 평가하는데 6급은 한계가 있음.

한국 대학(원) 교육의 질 보장 필요성

- 질 보장:** 교수진, 한국인 대학(원)생, 초·중급 및 고급 한국어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 이를 통해 한국 대학(원) 교육의 국내외 이미지 저하를 방지하고, 유학생 중도 탈락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관련 문제

- 취업의 어려움:** 시간제 취업 및 인턴십의 어려움.
- 졸업 후 취업 가능성:** 전공 관련 국내의 취업 가능성 문제.



참고문헌:

김태은. (2023).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Study Korea 300K Project'에 대한 소고. 문화와융합, 45(12).

김지하, 조옥경, 서영인, 문보은, 송효준, 김지은, 채재은. (2020).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근영, 김본영, 오지연. (2022).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조사방안 탐색. 2022-9 이슈페이퍼. 한국교육개발원.

이윤·주김명광. (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 장벽 고찰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5(4).

이천수. (1994).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명주·김경환·김규찬·김옥녀·김태환·김희주·문병기·우영옥·이성순·이향수·임동진·장주영·황민철. (2024). 한국이민정책론. 대영문화사.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관련 법제”에 대한 토론문

염 지 애*

1. 들어가기 : 왜 “외국인 유학생 법제”인가?

현대 사회에서 인구 감소와 이주 문제는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이다.¹⁾ 인구 감소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기반을 약화시키며,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국가가 이주민 유입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유입을 단순히 인구 보충의 수단으로 삼는 접근은 윤리적·사회적 위험을 수반한다. 이는 이주민을 잠재적 경제 자원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인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부차적 문제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주민과 수용 사회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배타적 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주로 우수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정과제 제82호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다. 또한 국정과제 제113호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대학이 지역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는 경제 성장 및 지역 발전과 밀접히 연계된다.

120대 국정과제	과제목표	주요내용	기대효과	주관부처
No.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책임의 학습 지 원과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 (융합인재 양성)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 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유 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 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체도로 전환	교육부
No.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대학 및 산업 등 에 대한 자기책임성 을 강화하여 ‘지역 인재양성-취업·창업 -정주’의 지역 인재 양성체계 구축	○ (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산업에 맞 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중심 창업· 산학협력 및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지자체-대학의 긴밀 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 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 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주도	교육부

*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1) Muzaffar Chishti and Randy Capps, “Slowing U.S. Population Growth Could Prompt New Pressure for Immigration Reform”, *Migration Policy Institute*, may 26, 2021.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immigration-role-slowing-us-population-growth>(최종접속: 2024.10.28.)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경제적 목표를 위한 자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단기적 경제적 기여자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실질적 지원을 포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는 국가적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어떠한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정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전문 인력화의 대상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통합될 잠재적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또는 인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로 인식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입법 및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가의 정책 목표와 사회 통합 전략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청한다.

2.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단계

발표자료(표 10 :교육부와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초기의 양적 확대에서, 이후 질적 관리로, 그리고 최근에는 통합 관리로 중점을 이동해 변화해 왔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내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변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정책 초기의 양적 확대는 한국이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규모로 유치하려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단계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절대적 수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법적 차원에서는 체류 비자 발급 요건의 완화, 학업과 체류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방안이 주로 채택되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단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유학생의 장기적 사회 통합보다는 단기적 기여에 중점을 둔 정책적 결정이었다.

둘째, 이후 정책은 질적 관리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업 성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인적 자원을 넘어, 한국 고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의 질 향상과 체류 및 취업(창업) 지원 확대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 보다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셋째, 최근의 통합 관리로의 정책 변화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 잠재적 구성원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반영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학업 지원뿐 아니라 체류, 취업, 사회 적응을 모두 포함한 정책적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단계별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의 유학생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 유입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다시 양적 확대 정책을 강화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청하고 싶다.

또한, 발표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현행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최근 한신대 유학생의 강제출국 사건²⁾을 언급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통합관리를 목표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학업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한 교육 수혜자가 아닌 잠재적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체류와 학업을 연계하는 통합적 관리가 필수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및 학습에 대한 법적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3. 맺음말 :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사회통합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단순히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 기여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학생이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잠재적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문화 존중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정체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주민과 수용 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김민제, “한신대는 왜 유학생 강제출국을 밀어붙였을까”, 한겨레, 2023.12.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1453.html>(최종접속 : 2024.10.28.)

【제2발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국회 입법계류안을 중심으로 -

박 광 동 선임연구위원/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ntents

I 현황

II 법제개선





I 연구개요

1. 현황

1 현황

□ 국내 외국인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 수 및 다문화 증가
 - 장기체류 다수
 - 내국인의 해외이민 가는 국가에서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하는 이민국가** 전환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체류외국인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 장기체류	1,583,099	1,687,733	1,731,803	1,610,323	1,569,836
- 단기체류	597,399	679,874	792,853	425,752	386,945
불법체류자	251,041	355,126	390,281	392,196	388,700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외국인 정책 기조의 현황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 종전 임시 체류 노동자로의 인식에서 국내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인식 변화

I 연구개요

1. 현황

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시가 본 현황

Microsoft Bing 사회통합 관점에서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과제에 대한 답변

- 외국인 정책의 통합과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과 강화
-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국민의 다문화 이해를 동시에 증진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전환
- 이민자의 권리보호와 인권옹호를 강화하고, 차별과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법제와 제도의 개선
- 이민자의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서비스와 자립유도형 복지정책의 마련
- 이민자의 정치적 참여와 시민권 확대를 통한 국민적 통합의 실현

I 연구개요

1. 현황

6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3 사회통합의 개념

□ 사회통합 개념의 다의성 및 다양성

○ 다양성

기관	통합 개념
유럽위원회의 「이민, 통합 및 고용에 관한 유럽위원회 통지	통합은 모든 이민과 회원국 주민에 의한 상호 적응(mutual accommodation)의 역동적인 양방향 과정
유엔 난민기구	전제 : 쌍방향 프로세스 + 호스트 사회(국가, 사람)의 환영(Welcome)

☞ 평화로운 사회관계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대화에 참여하는 역동적이고 구조화된 과정

- (전제) 사회통합: 공동체 소속감 + 상호작용 → 상대적 형평성

(①사회적 지위 이동 기회 제공, ②사회참여의 접근, ③능동적 역할 부여)

I 연구개요
7

1. 현황

4 한국 사회통합 현황

□ 국제지수에 나타난 현황

○ 이주민통합정책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영역	주요 내용
4. 포괄적인 통합 - 절반 정도 유리 (COMPREHENSIVE INTEGRATION HALFWAY FAVOURABLE) (평균 점수 : 50/100)	이민자들에게 평등한 권리, 기회, 안전한 미래를 제공하는 데 절반만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 가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체코 (50) • 에스토니아 (50) • 한국 (56) • 몰타 (48) • 터키 (43)

○ 한국 56위

- 한국은 통합에 대한 약속을 후퇴시킨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2점)

☞ 최근 이주민통합정책지수에 부합하는 정책 다수 추진

I 연구개요
8

1. 현황

5 외국인의 범위

□ 외국인 용어와 범위의 다양성

○ 법령상 외국인 관련 용어로 재한외국인, 외국인 주민, 이주민, 난민, 다문화 가족,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해외인재 등 다양

○ 부처별 외국인에 대한 다름: 이는 당해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임

용어	
외국인근로자	- 관련법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결혼이민자	- 관련법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입법목적에 맞게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

I 연구개요
9

I.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6 정책 현황

○ 국정과제

목표	약속	국정과제	내용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p>[과제목표]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p> <p>[주요내용]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리 증진</p> <p>[기대효과]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이 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사회통합지수 5년내 현행 68점 → 80점 이상 목표)</p>

☞ 사회통합(공동체 소속감 + 상호작용) 관련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I 연구개요
10

I.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6 정책 현황

○ 1차-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출입국 관리정책 (1960-2007)	제1차 외국인정책 (2008-2012)	제2차 외국인정책 (2013-2017)	제3차 외국인정책	환경변화	제4차 이민정책 (2023-2027)
형성기	도입기	확대기	심화기	환경변화	질적 전환기
「출입국관리법」제정(1963)	「제한외국인처우 기본법」제정 (2007)	「난민법」시행 (2013)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2019)	제4차산업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 전담 조직 재편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199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2007)	제정착·난민제도 시행 (2015)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확대 (2020)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소멸 위기	국민공감에 기반한 이민정책 추진 재원 마련
「재외동포법」제정 (1999)	동포 방문 취업제 시행 (2007)		복수국적 허용 확대 결혼이민자→우수인재 (2020)	아시아 역내 유입 경쟁	
고용허가제 시행 (2004)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2009)	계정 근로자제도 시행 (2015)		한류문화 확산	국내정책 관점을 넘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확장
활용(현재 외국인 수요 충족)			활용+미래준비		

☞ 사회통합(공동체 소속감 + 상호작용)에 부합하는 정책 확대 과정

I 연구개요 11

I.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6 정책 현황

○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2024.9.26)

비전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력·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및 지역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별 유입 및 사회통합 촉진으로 다가올 이민사회 선제적 대비
주요 정책 과제	[1]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신설 유학생 졸업 후 구직·취업 연계 강화 전문인력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3]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 입국 전·후 사회통합교육 강화 “사회통합기금” 신설 증장기 검토
	[2]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 제안제”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4]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적 분석 기반 도입규모 결정 불법체류·범죄 발생 시 환류 강화 해외인력 도입·관리시스템 개선
주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능인력 5년 내 10만 명 추가 확보 ⇒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기반 비자(계절근로, 지역특화) 확대 ⇒ 지역상주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유입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 ⇒ 갈등 최소화, 이민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외국인력 선별 도입 및 체계적 규모 관리 ⇒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 	

☞ 사회통합: 공동체 소속감 + 상호작용에 부합

1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I 법제개선



II 연구내용

II. 법제개선

13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 불법체류외국인 용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현행	개정안
<p>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 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p> <p>2. ~ 6.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1. 재한외국인, 체류자격위반자 및 제 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p> <p>2. ~ 6. (생략)</p> <p>② (생략)</p>

☞ (검토) 사회통합: 공동체 소속감 + 상호작용을 위한 **용어의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 다만, **체류자격위반자의 범위**(체류자격위반자, 체류기간도과자, 밀입국자, 유효한 체류자격 소지자이나 체류조건을 위반한 자등)을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의 고려 필요

II 연구내용

II. 법제개선

14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의 범위 확대 및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현행	개정안
<p>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생략)</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프로그램 및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14조의3(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가족에 대하여도 제공할 수 있다.</p> <p>1.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p> <p>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p>

☞ (검토) 사회통합: 공동체 소속감 + 상호작용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다만, 정책집행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집행 필요

II. 법제개선

3 출입국 관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강화

□ [출입국관리법]외국인에 대한 보호시설 보호기간 [1인]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혜택)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 미소지 또는 고등부징금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18개월의 범위에서 그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할증되지 않는 주의 사유로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의 국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호에 관한 기간에 대하여 18개월의 범위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다.</p> <p>1. 국가보안법, 위법의 죄를 범한 사람</p> <p>2. 국민보호와 공안유지를 위한 테러방지법, 위법의 죄를 범한 사람</p> <p>3. 동등 또는 열방유치 및 대량살상범죄피해사을 위한 사근조단행위의근지에 관한 법률, 위법의 죄를 범한 사람</p> <p>4. 형법, 제2연계(과내연의 죄 제2항 전항)의 죄 제1항 목유에 관한 죄 제5항 공익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p> <p>5. 그 밖에 공안유치 및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로서 법원으로부터 송환하는 부양의 유무 인정 또는 송환을 시고하는 사람</p> <p>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재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신설)</p> <p>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조의2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p> <p>(신설)</p>	<p>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 미소지 또는 고등부징금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18개월의 범위에서 그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할증되지 않는 주의 사유로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의 국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호에 관한 기간에 대하여 18개월의 범위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다.</p> <p>1. 국가보안법, 위법의 죄를 범한 사람</p> <p>2. 국민보호와 공안유지를 위한 테러방지법, 위법의 죄를 범한 사람</p> <p>3. 동등 또는 열방유치 및 대량살상범죄피해사을 위한 사근조단행위의근지에 관한 법률, 위법의 죄를 범한 사람</p> <p>4. 형법, 제2연계(과내연의 죄 제2항 전항)의 죄 제1항 목유에 관한 죄 제5항 공익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p> <p>5. 그 밖에 공안유치 및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로서 법원으로부터 송환하는 부양의 유무 인정 또는 송환을 시고하는 사람</p> <p>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보호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p> <p>(삭제)</p> <p>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러 미소지 등 강제퇴거에 필요한 조치가 있거나 주거의 재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1. 최후사형에 대한 장기징기 보고</p> <p>2. 장기징기인 출석</p> <p>3. 상시감시가능성(안락법령 및 안락시설) 제공</p> <p>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의 이행</p> <p>(삭제)</p> <p>제63조의2(보호혜택 된 사람의 재보호)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혜택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보고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할 수 있다.</p> <p>1. 도주하거나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p> <p>2. 범죄에 관여하는 혐의 또는 죄를 범한 경우</p> <p>3. 보호시설에 있어 사유를 위반한 경우</p> <p>② 보호혜택 된 사람의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 된 경우 제63조제1항에 정한 보호기간은 다시 보호된 날로부터 기산한다.</p>

II. 법제개선

3 출입국 관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강화

□ [출입국관리법]외국인에 대한 보호시설 보호기간 [2인]

현행	개정안
<p>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된 사람의 보호혜택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앞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후단 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혜택)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러 미소지 또는 고등부징금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p> <p><신설></p> <p>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p> <p>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재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그의 처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이하 "관할 지방법원 판사"라 한다)..... 그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p> <p>②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보호된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결정한다. 이 경우 보호된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사람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앞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④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제2항에 따라 보호혜택을 명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재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혜택) ①없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다른 수없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다른 수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이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향가능성,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보호로 인하여 일개 될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그의 처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기간은 40일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p> <p>③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앞서 보호기간의 연장허가에 대한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된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사람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보호기간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제2항에 따른 2항에 따른 허가를 송환이 곤란하거나 송환될 경우 또는 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송환이 곤란하거나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⑤제4항 또는 제5항.....주거의 재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p> <p>⑥ (현행 제6항과 같음)</p>

II 연구내용
21

II. 법제개선

6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현행	개정안
<p><u>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u>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p>	<p><u>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u>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검토) 사회통합: 공동체 소속감 +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보장 범위 확대

- '성년인 자녀'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II 연구내용
22

II. 법제개선

7
그 밖의 사항

□ 거버넌스 문제

☞ (검토)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출입국관리법/ 정부조직법

- 인구전략기획부와의 관계성 검토 필요

□ 기금

☞ (검토) 사회통합기금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지정토론】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임희선*

2024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약 5,245만 명)의 5.2%를 차지하며, OECD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규정하는 총 인구 대비 5%를 초과했습니다¹⁾. 장기 체류 외국인인 201만 명으로, 단기 체류자(약 68만 명)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 추세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회통합이 단순히 외국인들이 기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기존 사회 또한 외국인들의 문화와 특성을 수용하고 변화해 나가는 쌍방향적 과정이라 이해됩니다. 이러한 쌍방향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가 외국인들을 더욱 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적 차별 방지 강화, 종교문화적 관습 존중, 정치 참여 기회 확대, 공공 서비스 언어 지원 강화, 미디어에서 다문화 콘텐츠 확대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 유입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가 균형을 이루어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이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유입은 노동력 확보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큰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면 사회통합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이익, 외국인 유입, 사회통합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작용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 외국인 유입의 변화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균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함으로써, 연구 배경의 논점을 풍부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캐나다는 과도한 외국인 유입이 주택 가격 상승, 사회 복지 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이민정책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 유입을 경제적 필요에 따라 확대하기보다, 사회적 수용성과 경제적 이익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행정연구원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년 9월)

종합토론문

강 성 식*

1. 외국인 유학생 관련

-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및 학습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부족하다는 메흐리 슈쿠로바 박사님의 지적에 공감함
- 한신대 강제출국 사건의 경우, 일반연수(D-4) 비자를 받고 입국한 어학연수생들 22명이 학교 측에 의해 강제로 출국당했던 사건이었음
- 관련하여, 강제출국을 진행한 학교측 담당자 3명과 함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학연수생들이 차후에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증발급인정서를 허가해주는 데 관여하였던 출입국 담당자도 2024. 5. 22. 검찰 송치되었음
- 기본적으로는 현행 제도상 허가되어서는 안되는 사증발급인정서가 허가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허가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이를 믿고 입국하여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약속된 기간 동안 교육 및 학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함
-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인유학생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가 유일한 법률규정임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변호사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20. 6. 9.>

1.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 규정은 외국인유학생의 ‘보호’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둔 규정이며, 외국인유학생이 일단 입학 및 입국이 승인되었다면, 그 승인된 학사일정 및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본인의 귀책사유(형사처벌 등 강제퇴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의 체류 및 학교에서의 생활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선언적으로나마 ‘외국인유학생의 교육 및 학습권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함(또는 선언적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음)
- 메호리 슈쿠로바 박사님께서 시간제 취업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제조업이나 영어키즈카페의 경우 시간제 취업이 제한된다고 말씀해주셨음.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 또는 KIIP 4단계를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영어키즈카페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안전보조원 또는 놀이보조원(어학강사 제외)’으로만 취업이 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으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도 불필요한 제한은 해제하거나, 세부적인 요건들을 정비하여 최대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영어키즈카페의 경우, 약 3년 전에는 시간제 취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던 분야인데, 현재는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임)

2.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개선 관련

- 사회통합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의 다양한 법제개선 제안을 해주신 박광동 박사님의 제안들에 전체적으로 동의함
- 다만 불법체류외국인은 한국의 법률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법제도화하더라도 그 제도권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서, 외국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국민들의 치안 악화 우려로 인한 반감 형성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사람들임. 특히나 그 숫자가 40만 명(전체 체류외국인의 15%)을 넘는 현 상황에서는, 위와 같

은 악영향이 매우 커진 상황이므로,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보임

- 그들에 대한 공동체 소속감 내지 상호작용을 법제도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의 용어 변경(체류자격 위반자 등)은,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회통합을 후퇴시킬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사회통합의 개념표지로 제시해주신 ① 사회적 지위 이동 기회 제공, ② 사회참여에의 접근, ③ 능동적 역할 부여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개정도 제안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는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강제퇴거될 수 있음
-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한 연구(박주영,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4. 3.)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분이 가능하며,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제퇴거가 가능하여 비례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하였음(제44-58면)
- 그리고 위 규정이 신설되었던 취지에 대해서도, 1977년 도입 당시의 국회 회의록 등을 검토하면, 유신 체제 하에서 외국인 신부 및 목사들의 민주화 관련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제9-14면, 제39-40면)
- 위 규정의 목적은 국가의 주권 보호와 질서 유지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그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규정방식은 너무 투박함. 위 3가지 사회통합 개념표지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면, 적어도 금지되어야 하는 국가의 주권 및 질서를 침해하는 정치활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반국가적 또는 국가체제 전복목적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에서 체류하며 함께 생활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박광동 박사님께서 제시해주신 사회통합의 개념표지들을 충족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됨
- 처음부터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은 힘들겠지만, 헌법상 기본권 중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해당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은 허용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종합토론문

유 민 이*

1. 이주 동기와 이주민 특성에 따른 이민정책의 전개

최근 국제이주의 형태는 지배적인 글로벌 흐름과 더불어 각 국가에 처한 사회, 경제, 그리고 인구통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주의 글로벌 흐름에 있어 이주변천을 겪으며 신흥이민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극심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므로 국제이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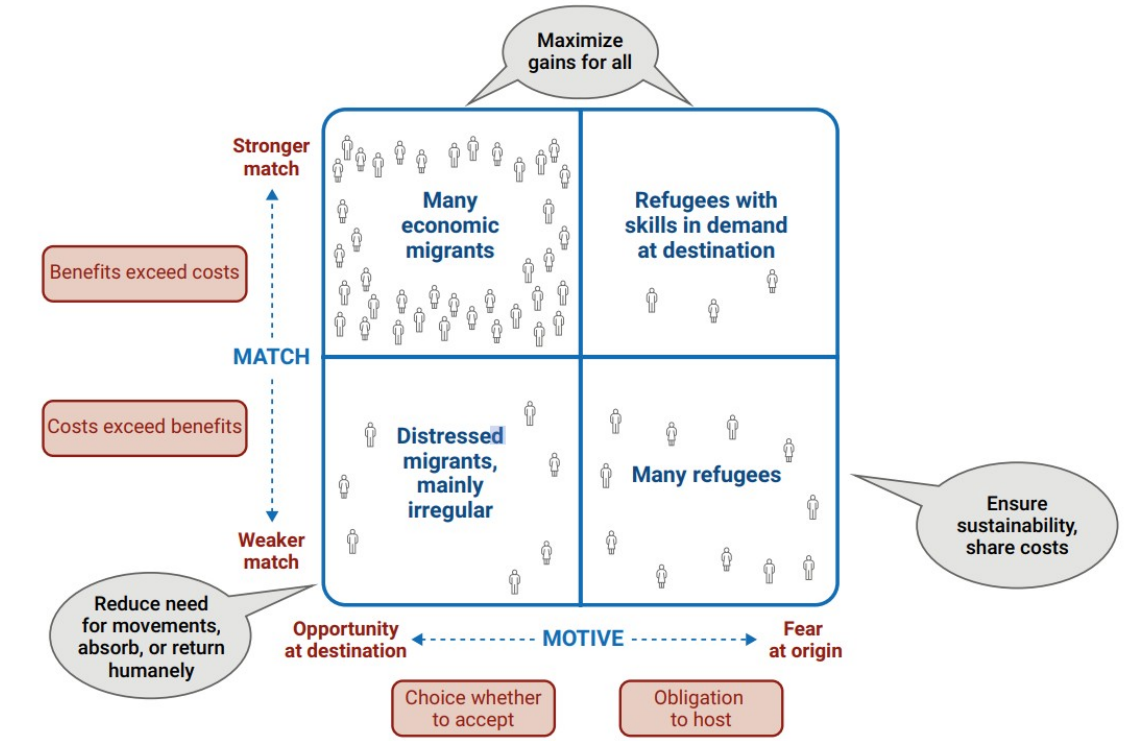
World Bank(2023)는 국제이주에 대한 영향을 보다 이익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위하여 ‘매치와 모티브 매트릭스(The match and motive matrix)’를 개발하였다. 이주라는 것 자체가 송출국과 유입국 모두에게 이익과 비용을 수반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용을 낮추면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자 개인의 특성, 이주를 하는 동기(motive), 그리고 각 국의 이민정책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입국의 경우 누구를 합법적으로 체류시킬 것인지, 이주민들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을 정하기 때문에 유입국의 정책은 중요성이 높다. 이러한 매치와 모티브 매트릭스를 완성하기 위하여 World Bank는 주로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과 국제법(international law)의 렌즈를 적용한다. 노동경제학은 이주자가 보유한 기술과 유입국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요구하는 노동자의 속성 간의 “매치(match)”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국제법은 폭력, 박해, 갈등 등에 대한 “근거있는 두려움” 때문에 본국을 떠나는 사람들(난민)에 대하여 유입국 국가가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주의 동기’와 ‘이주자 기술과 유입국 수요의 매치’에 따른 국가의 편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정책의 의사결정자들은 아래와 같은 매트릭스를 통해 이주를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1사분면은 ‘유입국의 수요와 노동이주자의 기술과 특성이 강하게 매칭되는 경우’로 기술을 보유한 이주민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자신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고숙련자이든, 저숙련자이든 심지어는 미등록자인 경우에도 본인 자신은 물론 본국, 그리고 유입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물론 유입국에는 경제적, 사회

* 이민정책연구원

적, 인적 비용이 수반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익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의 국제이주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림 58> 국제이주에 대한 매치와 모티브 매트릭스 프레임워크



2사분면은 ‘난민들이 가진 기술과 속성이 유입국 수요가 강하게 매칭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의 어려움에서 탈피하고자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택했음에도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속성이 목적지 국가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이주는 자발적 이주자들이 가져오는 이익을 가져다준다. 이 경우 난민들을 유입한 국가들에서는 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를 제공하며 자국민 및 난민들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3사분면은 ‘난민들이 노동시장의 고려가 아닌 안전에 대한 즉각적 필요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하고, 이들이 보유한 기술은 수용국 사회에서 수요가 없을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법에서는 비용에 상관없이 난민들은 수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난민은 수용하지만 이들이 가진 기술이 유입국에서 활용될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권리는 제한된다. 따라서 수요와 의무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이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국가들은 난민의 수용을 꺼리게 된다. 이런 경우 유입국은 난민 수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를 국제적으로 분담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난민이 아닌) 자발적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속성이 유입국의 수요에 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경우’로 이러한 이주민들의 총 규모는 많지 않지만 이들의 이동은 비정규적이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입국가에는 중대한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입국은 이주민들의 비자발적 귀환을 인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주민들의 인센티브를 노동시장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이주민들의 잠재적 기술력과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용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이주동기와 이주민의 기술-유입국의 수요 매칭여부 등에 따라 국가들(특히 유입국)의 이민정책 방향은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네 가지 유형의 이주민이 모두 존재하지만 특히 기술을 보유한 자발적 이주민이 많은 상황이었으나 한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구성에 대한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수요에 어떠한 이주민을 유입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는 동안 어떻게 관리 및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 상황에 대해 World Bank의 프레임워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World Bank는 보다 차별화된 이민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와 증거’, ‘재정적 수단’, 그리고 ‘새로운 발언권’에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데이터와 증거의 경우 이주민과 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들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여 연구하며 특히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식·비공식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재정적 수단은 난민수용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 특히 저소득 또는 중간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이지만 난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수단을 개발하고,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발언권에서는 이주민이나 난민의 목소리 뿐 아니라 이주민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자국민, 그리고 국내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자문을 받는 경우 보다 차별화되고 발전적인 이민정책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데이터와 증거 기반 이주민 사회통합과 법제 개선 방안

이주의 과정에서 유입 이후에는 이주한 국가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잘 적응하고 통합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통합은 이주자 자신과 본국, 그리고 거주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 개인 및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통합에 대하여 국제기구 및 국제지표, 그리고 국내·외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①수용국에서 이민자의 기회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 보장 ② 수용국의 이민자에 대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③ 내국인과 이민자의 상호조화와 존중 ④ 이민자의 수용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을 정의로 제시하고 있었다. 즉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수용국의 이민자에 대한 책임과 이민자의 수용국에 대한 책임 사항으로, 수용국은 대체로 이민자를 ‘인간’으로서 존엄성, 기본권, 형성평 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져 있으며, 이민자는 본국 외 수용국에서도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처우기본법)은 그 제정목적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조항에서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제11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제15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제18조) 등을 통해 사회통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근거(데이터)에 기반한 사회통합 정책평가 및 개발’로, 정책평가는 ①과제·사업(programs)의 종료 또는 계속에 대한 영향 ②사업의 개선사항에 대한 결정 ③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④사회현상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몽 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통합정책은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처우기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근거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평가시기와 과정으로, 매년 수립되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목표, 대상, 평가의 기본요소 및 지원 요소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반복적·형식적인 지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1년 단위 과제평가로 인해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과 성과평가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과지표의 설정과 관련한 한계점으로 현행 성과지표는 대체로 ‘달성가능성’과 ‘측정가능성’이 높은 지표로만 선정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정책이라는 국가전략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써 성과지표가 활용되기 보다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 앞선 내용과 같이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투입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외국인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사업평가지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평가지표 선정 전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통합정책에 대한 성과로 측정되고 있는 ‘사업의 운영여부, 회의, 행사 및 교육 개최여부’ 등은 대표적인 투입지표이며, 이로 인한 참가자 수, 보도자료 배포 수는 과정지표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에는 만족도 역시 명확성과 신뢰성, 검증가능성 측면에서 정확한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제하는 추세에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가 차년도 정책에 환류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인정책의 기본 목적·미션에 부합하도록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진행되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컨설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정책의 성과평가는 ‘제출’ 자체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한 환류, 인센티브 등의 체계가 없으므로 해당 과제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평가지표 설계 및 달성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23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지표(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을 시범도입하고, 2024년부터 이를 전국에 확대 실시 후 정기사업(매 3년)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2023년 시범사업을 필두로 2024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표 1> 이민통합정책 별도평가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연도별 시행계획)</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연도별 시행계획)</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p>(신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외국인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 ⑥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등 이민자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하여 제⑤항의 시행계획 평가 시 이민통합에 대한 과제를 선별하여 별도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민통합 정책 평가의 절차, 방법, 대상,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p> <p>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신설) 2.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 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4.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5.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6.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7.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이민통합정책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이민통합정책 별도평가를 위한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00조(이민통합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민통합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이민통합정책평가를 해야 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이민통합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민통합정책에 관한 별도 평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중 이민자(또는 제한외국인 및 귀화자) 사회통합과 관련한 사업 2. 그 밖에 별도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③ 법무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이민통합정책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문기관에 지급해야 한다.</p> <p>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민통합정책평가의 결과를 외국인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이민통합정책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이민자 사회통합조사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민통합정책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시행령에서는 제1항에 이민통합정책평가를 별도로 수행할 때 평가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피평가집단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피평가집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들이 무엇인지 정하였다. 제3항은 평가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제4항은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 제5항은 이민통합정책 평가를 위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조사가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평가 매뉴얼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칠 경우, 정책평가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었던 성과목표에 대한 타당성이 낮고, 평가를 위한 평가가 진행되며 결과가 차후 과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극복할 수 있다. 즉, 성과목표 수립단계부터 사전평가를 진행하여 통합정책 전반의 목표지향성과의 일치 및 성과지표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정 점검은 사후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평가절차의 대부분의 요소에 이민자 사회통합조사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통합정책에 대한 실현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항은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합토론문

임 정 재*

먼저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한국이민법학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발표자료를 검토하며 저도 여러모로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지정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논의를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1.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관련법제

먼저, 메흐리 슈쿠로바 박사님께서서는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관련 법제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유학생 현황과 관련 법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히 정리해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발표자께서 지적해주신 ‘외국인 유학생 관련 문제 및 개선점’ 중에서 특히 ‘시간제 취업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논의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 소멸 등의 문제를 겪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현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지방대학과 지방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에서, 진로탐색의 기회와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간제 취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연구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제 취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용주 서명-대학 담당자 확인-출입국사무소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며, 소요시간이 짧게는 1주, 길게는 4주까지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기근로라는 특성상, 고용주와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리과정이 지체되며 채용이 취소되거나 신청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부차적으로 신분증 제출을 꺼려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선호 업종과 제한 업종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피 개인과의 교습은 대학(원)생들에게 유용한 아르바이트 수단입니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개인과의 외를 선호하고 있으나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호텔관광과 학생이 호텔 등 숙박업소 관련 업무(하우스 키핑 등)를 신청하였으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업 종사자의 경우,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단기간에 건별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등 외국인 유학생이 선호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무면허, 무보험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유학생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뿐만,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를 유도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유학생은 학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 신분이고, 시간제 취업제도가 취업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¹⁾ 이러한 세분화된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제한 업종의 경우, 행위, 대상, 안전, 교육과의 연관성 등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고려되어 지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제시하였던 업종들을 제한업종에서 모두 제외하고자 주장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상술한 바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을 꺼리게 된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노동시장에서 위험하고 부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²⁾에 따르면, 취업경험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응답자의 31.9%가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³⁾, 이는 미신고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면담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정기교육에서 시간제 취업에 관한 규정을 교육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대부분 경제활동에 대한 규정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⁴⁾⁵⁾. 따라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다소 부족

-
- 1) 실제로 현장 실무자들은 일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을 하루로 몰아서 배치하는 등, 시간제 취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 2) 통계청·법무부(202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3) 신고함 41.8%, 신고않음 58.2%(= 취업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31.9% + 다른 유학생들도 하지 않아서 10.6% + 시간이 없어서 4.4% + 기타 11.5%)
 - 4) 동아일보(2022.11.15.). “단기 근무로는 생활비 충당 안돼” 불법 알바 나서는 유학생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115/116475722/1>).
 - 5) 고대신문(2024.31.11.). “합법과 불법사이, 유학생 유치 대작전”,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5>).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입장에서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자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법무부 측에서도 시간제 취업 허가자의 인원수가 허가 건수로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력 부족 및 업무과다로 인한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력충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문제를 둘러싼 다층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여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박광동 박사님께서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현재 국회입법계류안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신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자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개선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정책과 연관된 조직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상반되거나,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의 신설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정체되어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중장기적 외국인·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버넌스의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관련 정책은 선주민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운, 즉 흔히 말해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논의하고, 도출된 해결 방안을 법제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식 개선도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발표자께서 논의하신 사회통합을 이끌어가는 상호작용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 관련 교육의 범위 확대 및 강화” 부분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 정책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매우 민감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추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교육 지원이 고등교육, 특히 입시까지 확장된다면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지방 소멸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외국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의사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⁶⁾

6) 김명수 외(2023), 「외국인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57면.

이민 선진국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독일조차도, 이민자 유치 경쟁에서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화된 제도와 법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자 유치를 포함한 외국인 정책 영역에서 선진화된 제도와 법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의 관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제 개선을 통해 선진화된 제도와 법을 구축하고 이민 선진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이는 다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 중앙일보(2023.07.31.) “독일서 창업, 캐나다서 경찰...이 韓청년들에 ‘체류 공포’는 없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1377>)

종합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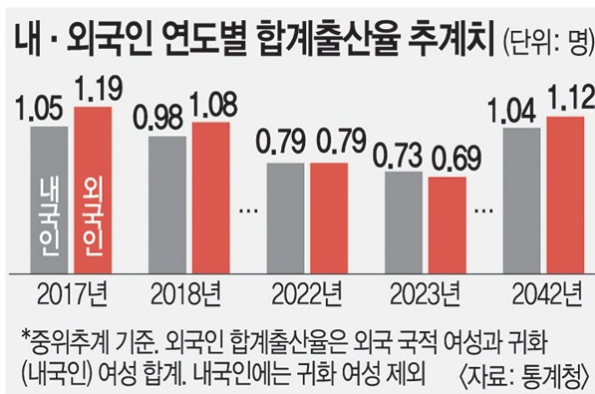
박 효 민*

1. 사회는 무엇으로 통합되는가?

- 많은 이민관련 연구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사회, 그리고 통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한국사회의 사회적 통합의 약화,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 구심점의 약화는 이주민, 선주민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 사회가 반드시 강하게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법치에 의한 안전의 보장, 장기적이고 직 간접적인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믿음, 사회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느낌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가 이전에 하나의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
-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통합 기제의 붕괴가 이민법, 이민정책에 함의하는 바는 우선 한국이 10년 20년 뒤에도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두번째 이주민에게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하는 점
- 실제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기제의 와해 현상이 이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

외국인도 애 안 낳는다... "저출산 한국에 동화"

입력: 2024-10-18 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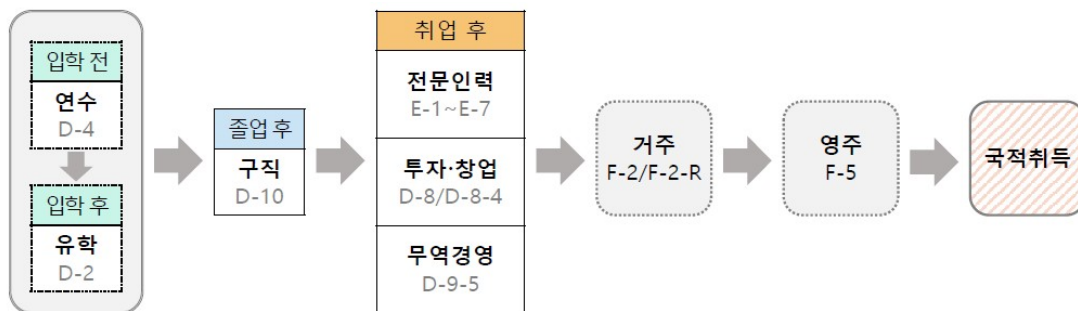


2. 사회통합 정책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내국인간의 사회통합, 그리고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 내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통합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보다 과감하게 초점이 내국인의 지향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현재 이민자에 대한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적 통합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얼마나 애착과 헌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이들에게 얼마나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문화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의 지향점, 미래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
- 예를 들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국에 계속 정주하며, 아이를 낳고 교육시켜 그들이 이곳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적 통합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국인에게도 이러한 생애주기적 방향성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3.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

- 위에서 제시한 생애주기적 측면의 문제는 유학생 정책에 대해서도 발생
- 실제로 한국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실제 답론은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대학 소멸과정에서 연락처를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큼
- 아래와 같은 이상적인 트랙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 이런 트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를 누구나 알고 있으나 아무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



- 외국인 유학생의 문제가 심화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에서의 인재 양성, 혹은 학문적 교류로 보지 않고, 각 행위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주요한 원인
- 외국인을 유치하여 학생수를 보전하려는 대학교, 성과를 도출하려는 교육부, 지역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지자체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선택을 하고 이 과정에서 유학생들 역시 이 기회구조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큼
- 실제로 현재 각 지역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일명 “라이즈(RISE)”사업을 통해 외국인을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자리를 잡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 활동가들의 의견은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되고 있음
- 우선 토픽 3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3급으로는 한국어 수업이 불가능하며, 또한 현재 외국인 학생은 주당 30시간, 주말 방학 제한 없이 일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산업연수생을 유학생 신분으로 유입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음. 이에 대해 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이라면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과 장학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인적자원(이와 같은 표현이 필요하다면)의 질이 향상되도록 투자하고 노력하여야 함
- 각 지역에는 E-7-1 전문비자의 경우 한국평균 GNI 80% 이상(연봉 3524만원)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중견기업 70%(연봉 3080만원)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인구소멸지역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많지 않으며, 편법으로 기숙사 비용 차감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에 훨씬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독건물의 경우 월 31만원, 부속건물의 경우 16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식대로 월 45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 최대 숙식제공을 통해 75만원이 공제 가능
- 과연 4-5년 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이와 같은 연봉을 받고 한국에서 일을 하려 할까 질문해 본다면 매우 부정적이며, 이들 역시 수도권으로, 혹은 불법취업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역특화비자(F-2-R)를 지역에만 한정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생김
- 실질적으로 한국 학생도 졸업 후 취업이 안되며,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초과학기 등록을 통한 졸업 유예에도 제한이 있음. 취업을 위한 대기기간을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리고 특히 우수대학 졸업자의 경우 취업조건부 비자에 대한 제약을 거의 실질적으로 없애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음